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1 선고 2021가단8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 고 A아파트 비상대책 위원회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주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5. 3.경부터 2020. 3.경까지 하남시 A아파트의 주민자치 회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주민들의 복지와 하자보수 시설 등으로 사용해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각종 공사 금액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정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정항변은 이유 있다.

##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희경